

[별표 7] <개정 2004.10.29>

전문교육이수등가산점(제15조제3항관련)

구분	자 격 증(0.5)			전 문 교 육(0.5)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보건·정보처리분야기사, 해기사 1급	법무사, 행정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보건·정보처리분야기사 1급, 해기사 2급	공인중개사, 통신·전산·교통·환경·건축·토목·항공·선박·화공·보건·정보처리분야기사 2급, 해기사 3급	직무전문화교육				학위취득	
				4주 이상	3주 이상	2주 이상	1주 이상	박사	석사
평정점	0.5	0.3	0.2	0.2	0.15	0.1	0.05	0.5	0.3

※ 비고 : 1. 자격증가산점과 전문교육가산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시 위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격증에 대하여 다시 가점으로 평정할 수 없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점으로 평정할 수 있다.
4. 직무전문화교육은 당해 계급에서의 경찰공무원교육기관·군위탁교육 또는 직무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장의 위탁에 의하여 이수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2이상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합산하되,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